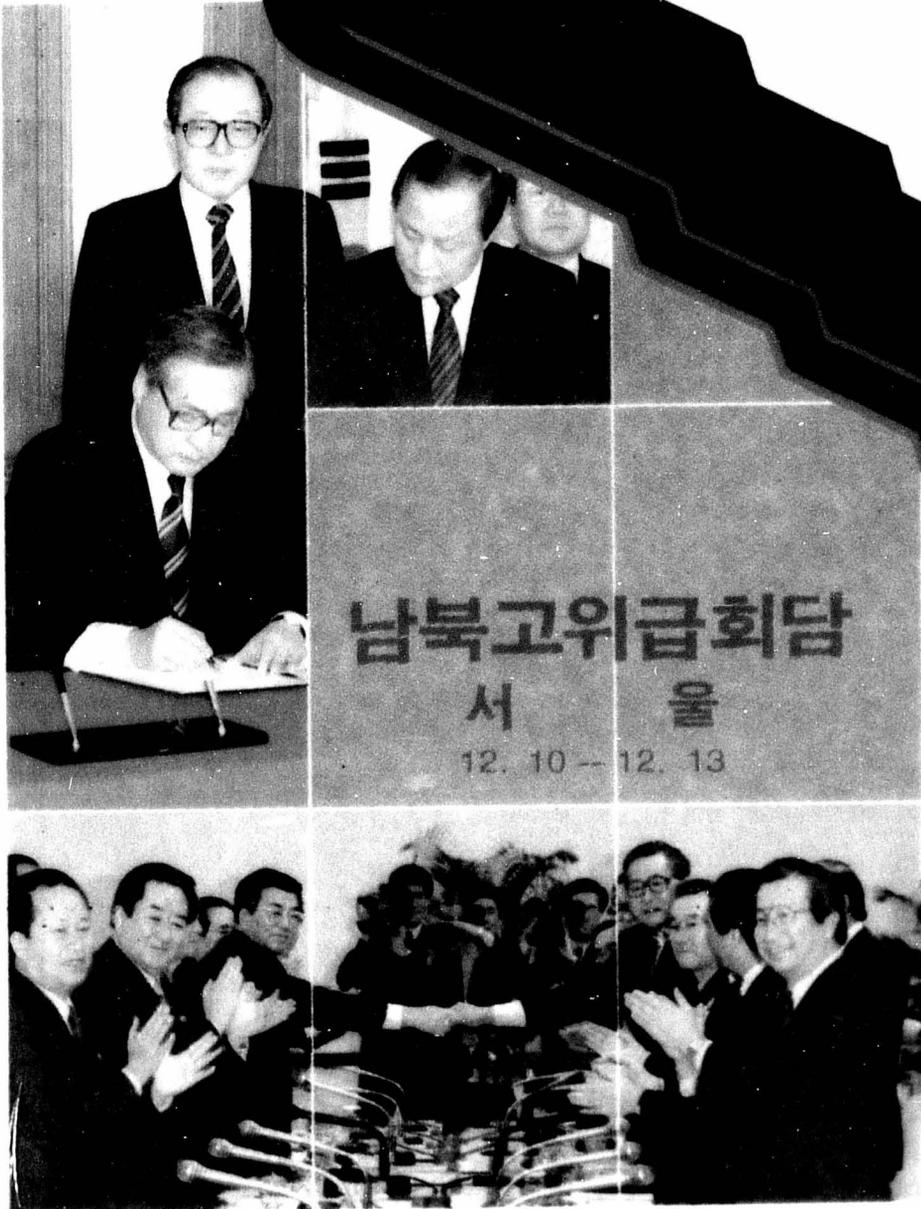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해설



목 차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다

1.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 3
 2.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인가? / 5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5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0
 3. 이 기본합의와 공동선언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 15
 4. 이런 합의와 선언은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질 것인가? / 22
 5. 남북 공존 공영의 새 시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 29
- <부록>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 34
 -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 / 39
 - #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 41

7 남북간 화해·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지난 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 5 차 회담에서 쌍방의 총리가 합의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올해 1월 20일에 쌍방총리간에 서명·교환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식으로 발효시켰다.

이로써 8·15 해방 이래 지난 47년간 대결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한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진입하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이 땅에도 평화공존과 공영을 함께 이룩해 나갈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

년 1992년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민족공동체 건설이란 위업을 달성키 위해 7천만 모두가 함께 일어난 원년(元年)으로 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지난 몇 해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 그리고 양극체제의 붕괴 등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면, 금년은 그러한 변혁의 물결이 드디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까지도 파급되어 이 지역에서 일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세계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대결과 분단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나갈 하나의 이정표로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자못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인가?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함께 남북화해(1장), 남북불가침(2장), 남북교류·협력(3장), 수정 및 발효(4장) 등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전문에서는 남과 북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

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특히 현존하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일반적인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분단사에 최초로 쌍방관계를 정의(定義)하는 명문적 합의로서, 앞으로 이것은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의 방법과 형태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1 장에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1 조),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과(2~4조),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5 조),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6조)을 규정하고 있어, 분단 47년 동안 남북 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대결, 긴장과 미움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다.

이어 제2장에서는 남북 상호간에 불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 불가침문제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돌연 「불가침선언」을 들고 나온 이래 고위급회담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여 왔던 것이나,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우리는 이것을 환영하면서도 불가침 약속에 대한 실천의지가 확인되고 이행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번 합의서에 수용되어 있는 상호 불가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1) 무력 불사용과 무력 침략 포기(9조), (2)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10조), (3)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11조), (4)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 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할 사항의 명시(12조), (5)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13조) 등으로서, 여기에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는 것과 함께 그 준수를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비교적 상세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 2 장에서 특히 우리가 유의할 점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실천과제를 열거하면서(12조), 단계적 군축실현문제의 하나로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대량살상무기’란 개념 속에는 현대전의 최첨단 살상무기로 등장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바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항인 핵무기 제거 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항간의 지적은 본지(本旨)를 잘못 이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 사람들의 왕래와 접촉, 기타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남북간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

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라고 쌍방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제16조는 남북간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와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비경제분야에서도 도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다음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17조),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18조)고 밝히고 있어, 1천만 이산가족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북 주민(‘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의서에서는 ‘민족구성원’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까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끊어진 남북간의 교통로와 우편·전기 통신의 재연결 및 통신교류의 비밀보장(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 공동 진출(21조)도 약속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에는 이밖에도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실천조치와 협의·실천기구들(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 등)에 관한 조항들이 각 장마다 설정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뒤에 소개 될 것이다.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지난 해 12월중 3차례에 걸친 대표접촉 끝에 12월 31일 채택된 이 「공동선언」은 전문과 함께 6개 항에 걸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공동선언」은 그 전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

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은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1항), ②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2항), ③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3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4항), ⑤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5항)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가 이 「공동선언」에 담은 정책적 의도는 ① 남북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 나가며, ②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사실상 철회케 할

뿐만 아니라, (3) 우리측의 거듭된 핵부재선언*(核不在宣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띠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된 과정과 그 구체적 합의내용을 보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두가지 차원에서 일단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 비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정한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전제하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 핵부재선언 / 노태우 대통령은 91년 9월 24일 UN총회연설에 이어 11월 8일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12월 18일에는 한국내 「핵부재선언」을 발표하였고, 12월 11일 제 5차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음.

북한은 지난 1월 7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 그것을 비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지난 1월 30일 마침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 서명에 따른 비준과 발효절차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비핵화 공동선언」내용에 ‘남북 상호 사찰’조항을 명문화하여 북한측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이 「선언」 제 4 항에서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상호 사찰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남북한간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확인코자 하는 우리측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핵무기 폐기선언으로 알려진 1987년의 미·소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정」(INF)만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선정하는 핵시설에 관한 사찰실시가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켜 우리가 지정하는 북한의 핵관련 장소·시설·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찰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리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협상과정에서 북한측의 완강한 반대로 말미암아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으로 한정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선정한 대상에 대해서 북한측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새로운 국제적 압력을 초래하게 될 것인 만큼 북한측으로서는 그 행동에 제약이 따를 것은 틀림없다.

3 이 기본합의와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첫째로 남북간에 이루어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는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쌍방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틀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반목과 불신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간에 이질화가 심화된 오늘의 분단상황 속에서 설령 남북간에 어떤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이 함께 보장되는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는 없는 일이다.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질서 있고 안정되게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기왕의 남북관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평화공존의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통일정책의 우선을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두어 왔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의 개선노력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지난 90년 9월 이래 5차례에 걸친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회담 끝에 얻어진 이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쌍방은 당장에 통일을 이룩할 수 없을 바에야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 하지 않으며, 막혀 있는 상호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오가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하고 있다.

이것은 비유컨대 멀리 떨어져 반목하며 살아 왔던

두 형제가 다시 모여, 양지 바른 산기슭에 함께 살아 갈 통일이란 집을 짓고자 하는 데 앞서 그 집터까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키 위한 공사계획서를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기본합의는 분단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 그 자체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과 접근하는 방법에 쌍방이 동의하고 그 약속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은 우리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이전 단계인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막 평화통일의 도정에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해 가는 첫 발자국을 옮겨 놓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해 있었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임이 세계를 향한 남과 북의 평화공존선언이라면,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 7천만 민족성원들이 다짐해야 할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으로 나갈 새 장전(章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합의서」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지혜를 모아 책임있는 남북 당국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란 데에 커다란 의미가 주어진다.

최근 국제분쟁이나 분단국문제들이 제 3자의 개입이나 조정,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 온 여러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 남북간의 합의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데에 남다른 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서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달리 타의에 의해 강요된 불행한 분단사를 스스로 청산해 나가려는 민족 주체적 노력의 첫 결실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쌍방의 총리가 대표로 되어 있는 책임있는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명맥을 이어 왔던 쌍

방의 관계를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려 놓게 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의 남북간 「합의」와 「선언」은 그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지난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과는 차원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이번의 합의내용에는 지금까지 북한측이 고집해 온 대남전략노선을 일부 포기·수정케 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본입장을 적지 않게 관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 제 1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 남북 쌍방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1조), 2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2조), 3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하며(3조), 4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조)고 쌍방의 약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번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기만 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종래의 대남 혁명노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들이다.

또한 이 합의서에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5조)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한·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3자회담논리」를 북한측으로 하여금 버릴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민족자결정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하여 군축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해 오던 북한측으로 하여금 그에 앞서야 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케 하여(2장 12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정치·군사문제 해결 우선론에 계속 매달려 왔던 북한측에게 폐쇄된 그들 사회의 개방과 동요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큰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케 한 것(3장 15~

기조)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로 제 5 차 고위급회담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지난 해 말에 별도의 남북대표 접촉을 통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선 최근 세계적 관심의 초점으로 되어 온 북한측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포기케 하여 한반도를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우리 통일정책이 추구해가고 있는 1차적 목표인 민족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도모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4

이런 합의와 선언은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질 것인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일단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장전으로 효력을 발생케 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공존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기본 틀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와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는 각 조항은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거나 양측이 지켜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령적인 것들이어서 그 구체적인 실천성이나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972년 온 민족의 한결같은 기대와 환영 속에 발

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간에 헛된 말싸움만 계속한 끝에 이렇다 할 결실을 끝내 거두지 못한 채 유아무야된 선례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합의」와 「선언」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거나 큰 기대를 걸기에 앞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실히 준수되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남북 쌍방이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의 각 항을 앞으로 얼마 만큼이나 성실하게 지켜나가려 할 것인가 하는 실천의지의 강도가 관건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번의 「합의서」와 「공동선언」에는 우리측의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것을 실천에 옮겨 나갈 구체적인 조치들과 함께 실행기구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들을 함께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즉, 「기본합의서」 제 8조, 제14조, 제23조에는 합의서에 정하고 있는 합의내용 각 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비롯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내에 '본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 운영'할 것을 각기 명문화하고 있다.

또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실천기구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며(12조, 22조), 남과 북은 상호간의 연락과 협의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설치·운영할 것(7조)을 정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확인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5항)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간에 상호 핵사찰을 실시할 것(4항)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남북간의 약속과 합의사항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담겨진 합의내용들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위 「합의서」에 정해져 있는 바 남북고위급회담 산하의 남북간 협의기구로서 남북 정치·군사·교류 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와 「비핵화 공동선언」 제5항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남북간에 민족적인 화해와 신뢰를 되찾아 쌓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쉬운 것부터 찾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합의를 하나씩 이룩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부속합의서, 예컨대, 통행에 관한 합의서, 통신에 관한 합의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부속합의서를 갖가지로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분야별 협의

기구로 역할하게 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2. 7 남북고위급회담대표 3차 접촉시 합의)에 따라 쌍방에서 각각 7명의 위원(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으로 구성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는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된다.

다음 단계는 「합의서」에 기초하여 그 실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발족시키고, 이 기구들을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다.

우선 이미 합의된 바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을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설치 운영하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공동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남북한 사이에 먼저 합의되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려는 것이 우리측의 방침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우선 남북 화해분야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指名攻撃), 휴전선 확성기 방송, 각종 전단살포 등 비방·중상행위와 파괴·전복활동을 중지토록 하는 데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남북 불가침분야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쌍방 군인사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핵관련 시설, 물질, 장소에 대한 남북 상호 사찰이 조기에 실시됨으로써, 우리 민족 전체가 하루속히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분야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거래, 면회소 설치·운영도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남북간 물자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등 물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 촉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간에 상호 이익이 되고 북한측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발 참여나 시베리아 등 제3국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간 협력사업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의 과당경쟁이나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그 기반을 조성하고 적절히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남북이 서로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를 넓혀가는 가운데 하루속히 훼손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언론·방송·문화분야에서 시범적인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5 남북 공존 공영의 새 시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와 「공동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란 특별한 유대의식 속에서 공존 공영을 추구해 나가는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감에 있어서는 북한측이 종래의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합의된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고집해 온 대남·대외노선이나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당장에 대외 개방과 변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처하고 있는 내외 사정을 감안해 보면 두 개의 합의서에 담고 있는 약속들의 일부를 선별적으로나마 이행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금 소연방 해체와 동구권의 개혁 등이 가져온 외교적 고립과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고,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며, 김정일예의 권력세습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고, 대미·대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등장한 핵사찰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북한은 이제 일본과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적 고립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궁지에 처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서 대남관계도 재조정을 꾀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당국자들 역시 현존하는 권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경제개혁을 피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싫든 좋든 닫혀 있는 사회를 일부나마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금에 와 북한사회 내부에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혁명주의적 노선의 강조 속에서도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조짐이 하나씩 표출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이러한 실용주의적 개방화의 싹이 돋아나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북한측은 대내 통치적 필요에 따라 변화와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새로운 장애를 제기할 소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크고 긴 눈으로 내다 볼 때, 합의서에 관한 정책수요가 그들에게 존재하는 한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가 막연히 앉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유도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북한측의 호응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개의 합의서는 각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쌍방의 최고 당국자가 서명하여 7천만 겨레와 세계 앞에 선언한 엄숙한 약속인 만큼 이는 반드시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져야만 한다.

쌍방이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민족 앞에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 공존 공영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새 시대에 접어들면, 남북한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연합」과 같은 특별한 관리체제 아래서 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궁

극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이룩하는 조국통일의 대도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통일은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의 걸음으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지난 47년 동안 우리 민족을 고통과 질곡 속에 억눌러 왔던 분단과 대결의 구조는 바야흐로 와해되어 가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물줄기를 어떻게 평화공존의 관문으로 이끌어 질서 있고 안정되게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목표에 도달케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이와 같은 길을 남과 북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 어느 편도 상대방으로부터 몰락의 위협을 강요당하지 않는 공존 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간에 쌓인 민족 사이의 온갖 불신과 이질성을 해소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삶을 회복,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부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

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정 원 식

연 형 묵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

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정 원 식

연 형 묵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 예비회담 (89.2.8~90.7.26)

● 제 1 차 예비회담 (89.2.8, 「평화의 집」)

- 남북 양측이 쌍방 총리들이 만나는 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의 '팀스피리트 중지' 등 전제조건 거론으로 진전 없이 해산

● 제 2 차 예비회담 (89.3.2, 「통일각」)

- 북측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제와 관련한 3개 항의 긴 급제안으로 회담 공전

● 제 3 차 예비회담 (89.10.12, 「평화의 집」)

- 북측의 '문익환·임수경 석방' 등 회담 외적 문제 거론으로 토의에 들어가지 못함

● 제 4 차 예비회담 (89.11.15, 「통일각」)

- 절차문제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측이 의제에 '교류·협력'을 표기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진전 없음

● 제 5 차 예비회담 (89.12.20, 「평화의 집」)

- 회담 시작 후 처음으로 본회담 절차문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 의제 표기 순서를 제외한 본회담의 명칭, 대표단 구성, 회담시기 및 장소 등 모든 절차문제에 합의

● 제 6 차 예비회담 (90.1.31, 「통일각」)

- 북한측이 '콘크리트 장벽 제거',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여 회담 공전

● 제 7 차 예비회담 (90.7.3, 「평화의 집」)

- 의제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 전반에 타결을 보게 됨

※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해 두 차례(7.6, 7.12)의 실무대표 접촉을 거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문안 확정

● 제 8 차 예비회담 (90.7.26, 「통일각」)

- 남북 쌍방이 합의서를 낭독·확인하고 양측 수석 대표가 문본에 서명후 교환

■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90.9.4~7, 서울)

- 우리측은 8개 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10개 항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방안」, 8개 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과 5개 항의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제시

- 북측은 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과 ‘단일의석 유엔 공동가입’,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방북 구속자 석방’ 등 「3개 항의 긴급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며, 정치군사문제 해결 후 교류 협력 추진 입장 표명

- 쌍방의 상반된 입장 차이로 의제토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유엔가입문제 관련 남북 실무대표접촉과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데 합의

■ 제 2 차 남북고위급회담 (90.10.16~19, 평양)

- 우리측은 북측이 1 차회담시 제시한 「3개 항 회담원칙」을

수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수정안과
 ‘통행, 통신,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교류협력협의회」와 「정치군사협의회」 설치 제안

- 북측은 7개 항의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제안하면서
 2차회담에서 당장 합의·서명하자고 주장, 토의안건은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다방면적 협력 교류 실현방안’으로 구분 일괄 합의, 동시
 집행 주장

- 우리측은 북측 주장을 수용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
 한 공동선언」을 제시, 북측 이를 거부

■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90.12.11~14, 서울)

- 우리측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과
 「정치군사분과위」에서 협의 해결할 8개 항의 불가침에 관
 한 방안 제시

- 북측은 10개 항으로 된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
 언」을 제시하고 1, 2차회담시 제기한 「3개 항의 긴급문
 제」를 다시 거론, 우리측의 확답을 요구

■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 (91.10.22~25, 평양)

- 우리측 기존의 3개 합의를 하나로 묶은 「화해·불가침
 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시

- 북측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 제안
 으로 제시하고 별도로 「북남 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기
 본합의서」 제시

- 실무대표 접촉 결과 단일문건 채택, 합의서의 명칭, 내용

구성체계 등에 합의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91.12.10~13, 서울)

- 우리측 기존의 제안 내용 일부 조정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제시
- 북측은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제안
- 대표접촉 결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에 합의, 남북 총리 서명
- 핵문제 협의를 위한 별도의 대표 접촉 (12월중, 판문점), 제6차 회담 일자(92.2.18~21, 평양) 등에 합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

※ 별도의 남북대표 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안 합의(91.12.31, 「통일각」), 쌍방총리 서명·교환 (92.1.20)

- 제6차 회담 이전 대표접촉을 통해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협의키로 합의

※ 별도의 남북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문안 합의(92.2.7, 「평화의 집」)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92.2.18~21, 평양)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본 교환으로 공식 발효

번호 920-385 C.2

저자명 등암교총보국 (홍보과)

서명 화해·협박의 새시대는 여의

소속	이	름	대출일	반납일	반납일
----	---	---	-----	-----	-----

920-385

0.2

발행일 • 1992년 2월

발행처 • 통일원
(02)720-2430

인쇄처 • 정문사문화(주)